

소방안전관리 규정

1984.3.1 제정 1996.6.10 개정
 1985.12.3 개정 1996.8.28 개정
 1998.4.9 개정 2012.12.1 전면개정
 2015.11.1 일부개정
 <에너지·안전팀>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화재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세종캠퍼스 소방안전관리) 세종캠퍼스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“세종캠퍼스 소방안전관리 규정”으로 정한다.
- 제 3 조 (의료원 소방안전관리) 의료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“의료원 안전관리 규정”으로 정한다.
- 제 4 조 (규정의 준수) 본교의 교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5 조 (조직과 책임) ① 본교의 화재예방, 화재사고 진압 및 사후 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대학(원)·총장이 지정하는 기관·부서(이하 “각 대학·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,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처 에너지·안전팀(이하 “주관부서”)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둔다.
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각 대학·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책임구역 내의 소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③ 각 대학·기관별 책임건물은 총무처장이 정한 건물관리 책임부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 ④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·유지·보수·관리업무는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 2 장 소방안전 관리 임무의 분담

- 제 6 조 (각 대학·기관의 소방안전관리) ① 각 대학·기관의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대학·기관장으로 하며,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대학·기관의 과장 이상으로 한다.
 ②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·기관은 건물별로 구분하여 복수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.
- 제 7 조 (소방안전관리자 선임)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대학·기관별 감독직(과장직급 이상) 또는 시설관리담당자(과장이 없는 경우)로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.
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본교 직원 중 직급이 과장인 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,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 ③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④ 각 대학·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보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⑤ 각 대학·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고,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·직위·소방관련 취득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주관부서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) ① 각 대학·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말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
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계획서의 작성
2. 자위소방대의 조직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
4. 소방훈련 및 교육
5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
6. 화기취급의 감독
7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
제 9 조 (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) ① 각 대학·기관에서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총괄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.

②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안전관리자 선·해임 신고
2. 소방안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
3. 소방관련 공문접수 및 보고
4. 각종 회의 및 훈련 참가
5. 소방계획서 취합
6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
제 10 조 (안전관리위원회) ① 본교 총괄 안전관리를 포함한 소방안전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본교 안전관리규정 제5장의 안전관리위원회 각 조항 구성을 준용한다
- ③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주관부서 안전관리자가 된다.
-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”을 따른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2. 주요 소방업무 추진 현황 청취
3. 화재발생 기관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보고의 청취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⑥ 위원장은 각 대학·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자위소방대의 조직·운영) ① 화재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·기관은 자위소방대를 조직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자위소방대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·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교육훈련

제 12 조(교육훈련) ① 본교 직원 중 직급이 과장인 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승진자는 당해년도에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은 연1회 이상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제2항의 소방교육은 직접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④ 본부 및 각 대학·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원 등 소속 구성원에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의 소방훈련으로 기본·소화·통보·피난훈련 등 종합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각 대학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기간 등을 통하여 연1회 이상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⑦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교직원은 2년 1회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소방점검

제 13 조 (소방점검 등) 본부 및 각 대학·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의거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관할소방서장의 시정 조치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.

제 5 장 상벌 및 배상

제 14 조 (상벌 및 배상) ① 소방안전관리와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은 표창 할 수 있다.
 ② 교직원 및 학생,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이 고의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, 재해를 발생시키고, 이로 인하여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6 장 준 용

제 15 조(시행세칙 및 준용)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계법 및 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전면개정)
2. (경과규정) 개정 내용 중 관련법 「소방관계법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
2. (경과규정) ① 제5조, 제10조의 개정은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2014년 8월 1일자로 적용한다.

- ② 제10조 제1항, 제2항의 개정은 본교 안전관리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조직체계 변경에 관한 조항으로 2015년 3월 2일자로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